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2항중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를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5조제8항 후단중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주거복합시에는 350% 이하)로 한다”를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④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u>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u> 및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⑤ ~ ⑦ (생략)</p> <p>⑧ <u>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u></p>	<p><u>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u></p> <p>2. <u>균형발전사업지구</u></p> <p>3. 「<u>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u>」에 의한 「<u>재정비촉진지구</u>」</p> <p>4. <u>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u></p> <p>④ ----- ----- <u>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u> ----- ----- ----- -----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u></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률은 4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⑩ ~ ⑭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주거복합시에는 350% 이하)로 한다.</p> <p>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p> <p>-----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p> <p>-----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p> <p>⑩ ~ ⑭ (현행과 같음)</p> <p>⑮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p>	<p>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⑨ (개정안과 같음)</p> <p>⑩ ~ ⑭ (현행과 같음)</p> <p>⑮ (개정안과 같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p>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법 제2조제6호라목에 의한 공공청사를 말한다.”를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뉴타운사업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이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제10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중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동목(1)중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를 “(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로 한다.

라. 도료류 판매소

제29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9조제1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중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동목(1)중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를 “(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로 한다.

라. 도료류 판매소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제30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인쇄업”을 “인쇄업·금은세공업”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지역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8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제9항 본문중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경우 구청장이”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균형발전사업지구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제55조제4항중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9항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계획서”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을”로,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제3호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나. 균형발전사업지구

다.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추진지구”

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 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 「지방자치법」 제124조----- ----- -----</p>
<p>제 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u>영 제43조제1항 제7호</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생 략)</p>	<p>제 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u>영 제43조제1항 제8호</u>-----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 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영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u>법 제2조제6호라목에 의한 공공청사를 말한다.</u></p>	<p>제 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영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u></p>
<p>제 19조의2 (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p>	<p>제 19조의2 (반환금의 관리 등) ① --</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p>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뉴타운사업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u></p> <p>②·③ (생략)</p>	<p>----- ---- 「<u>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u>」의 규정에 의한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u>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5 제1호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 ----- -----, 1. (현행과 같음)</p> <p>2.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이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현 행	개 정 안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10.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도료류 판매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11.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 ----- -----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1)-----(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
(2)(생 략)	(2)(현행과 같음)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9.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 행	개 정 안
<p>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예정지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 아파트형공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u>각목의 1</u>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 나. (생 략)</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단서 신설></p> <p>라. ~ 바. (생 략)</p> <p>10. (생 략)</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p> <p>가. ~ 다.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u>각 목의 어느 하나</u></p> <p>-----</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u>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라. ~ 바.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11.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라. 도로류 판매소</u></p> <p>12.-----</p> <p>-----</p> <p>-----</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p>가. ~ 나. (생략)</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p> <p>(2)(생략)</p> <p>13. ~ 16. (생략)</p> <p>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5.·6. (생략)</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나. (생략)</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단서 신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p> <p>(1)-----(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p> <p>(2)(현행과 같음)</p> <p>13. ~ 16. (현행과 같음)</p> <p>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p> <p>5.·6. (현행과 같음)</p> <p>7. -----</p> <p>----- 각 목의 어느 하나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p>

현 행	개 정 안
<p>라. ~ 바. (생 략) 8. ~ 14. (생 략)</p> <p>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 나. (생 략)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단서 신설></p> <p>라. ~ 바. (생 략) 9. ~ 11. (생 략) ② (생 략)</p> <p>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p>	<p>한다.</p> <p>라. ~ 바. (현행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p> <p>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인쇄업·금은제공업----- -----각 목의 어 는 하나-----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 -----,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 바. (현행과 같음) 9.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 -----</p>

현 행	개 정 안
<p>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 <u>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p> <p>가. 나. (생 략)</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u>단서 신설</u>></p> <p>라. ~ 바. (생 략)</p> <p>7. ~ 9. (생 략)</p> <p>② (생 략)</p> <p>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 <u>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p> <p>가. 나. (생 략)</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p> <p>----- <u>각 목의 어느 하나</u> -----</p> <p>-----</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 <u>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라. ~ 바. (현행과 같음)</p> <p>7.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p> <p>----- <u>각 목의 어느 하나</u> -----</p> <p>-----</p> <p>가. 나. (현행과 같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단서 신설></p> <p>라. ~ 바. (생략)</p> <p>7. ~ 12. (생략)</p> <p>② (생략)</p>	<p>다. -----</p> <p>-----</p> <p>-----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 바. (현행과 같음)</p> <p>7. ~ 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8. ~ 13. (생략)</p>	<p>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이적지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p> <p>8. ~ 13. (현행과 같음)</p>
<p>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p>	<p>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수 있다.</p> <p>1. ~ 7. (생 략)</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나. (생 략)</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단서 신설></p> <p>라.·바. (생 략)</p> <p>9. ~ 14. (생 략)</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p> <p>-----</p> <p><u>각 목의 어느 하나</u>-----</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 <u>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라.·바. (현행과 같음)</p> <p>9. ~ 14. (현행과 같음)</p>
<p>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u>휴게음식점</u>,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p> <p>3. ~ 8. (생 략)</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u>각목의 1</u>에</p>	<p>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u>휴게음식점, 제과점</u>-----</p> <p>-----</p> <p>3. ~ 8. (현행과 같음)</p> <p>9. -----</p> <p>-----</p> <p>-----<u>각 목의 어느 하나</u>-----</p>

현행	개정안
<p>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나. (생략)</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단서 신설></p> <p>라.·마. (생략)</p> <p>10. ~ 13. (생략)</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 <u>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라.·마. (현행과 같음)</p> <p>10. ~ 13. (현행과 같음)</p>
<p>제 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생략)</p> <p>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u>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u>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u>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u>시도시계획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p>	<p>제 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경우</u> 구청장이 -----</p> <p>-----</p> <p>-----</p> <p>-----</p> <p>----- <u>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u> -----</p> <p>-----</p> <p>-----</p> <p>----- <u>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u> -----</p> <p>-----</p> <p>-----, -----</p>
<p>제 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제 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현행	개정안
<p><u>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u>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u>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u>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u></p>	<p>⑨ -----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u> ----- ----- ----- <u>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u>----- ----- -----<u>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u>-----.</p>
<p>⑩ ~ ⑭ (생략)</p>	<p>⑩ ~ ⑭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⑮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u>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u>」 제1조의2에 의한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p>
<p>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3. <u>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u></p>	<p>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 2. (현행과 같음) 3. <u>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u></p>

현 행	개 정 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u>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u> 」 제22조제1항의 <u>서울특별시도시재 정비위원회</u> ----- -----
4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 문	4 ----- -----

(다음 페이지에 계속)